#### 시·도지회운영세칙

제 정 2019. 10. 24.

- 제 1 조 (근거 및 목적) 이 세칙은 대한장애인당구협회(이하 "중앙협회"라 한다) 시·도 지회운영규정(이하 "지회운영규정"이라 한다) 제28조에 의하여 시·도 지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실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지회설립 인가) ① 중앙협회는 시·도장애인당구협회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지회 가입을 신청하면 당해 시·도의 유일한 지회로서 인가하여야 한다.
  - 1. 대표자(회장) 및 선출(추대)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- 2. 임원 명단 및 선임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- 3. 정관(규약)
  - 4. 기본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계획
  - 5. 지회설립 인가신청서(별지1의 소정 양식)
  - 6. 기타 지회설립 인가에 필요한 자료
  - ② 지회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협회는 제1항의 요건을 심사한 후,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 중앙협회장이 지회 인가를 하여야 한다.
- 제 3조(지회설립 인가증 발급) 제2조 제2항에 의한 지회 인가 시 '별지2'의 서식에 의하여 '지회 설립 인가증'을 발급하여야 하고,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한다.
- 제 4 조 (임원 선임 및 변동사항 신고) ① 지회의 임원은 중앙협회 시·도지회운영규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하여 중앙협회에 신고하여야 하고, 임원의 사임·추가선임 등 변동 시에도 이와 같다.
  - ② 해당 시·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장애인체육회에서 승 인한 임원을 중앙협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추가선임 등 변동 시에도 이와 같다.
- 제 5 조 (대의원 현황 관리) ① 중앙협회는 지회로서 인가한 시·도지회의 장에게 중앙 협회의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.
  - ② 중앙협회의 대의원총회 개최 시 시·도지회 장의 변동사항 등에 의한 대의원 자격 유무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, 대의원 권한을 위임 받은 자에 대한 가격 유무

도 심사하여야 한다.

- 제 6 조(정관 개정사항 신고) ① 시·도지회는 지회운영규정 제25조에 의하여 정관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신고된 정관의 내용에 있어서 중앙협회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 시·도지회는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.
- 제 7조(시·도장애인체육회 가맹사항 신고) ① 시·도지회는 지회 인가를 받은 후 해당 시·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을 하여야 하며, 가맹 승인결과를 반드시 중앙협회에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② 가맹 지위의 변경 시에도 이와 같다.
- 제 8 조 (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) 시·도지회는 매년 12월 말까지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중앙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 9조(사업결과 및 결산서 제출) 시·도지회는 차기년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서를 중앙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제규정 위배시 제재사항) 시·도지회가 중앙협회의 정관 제10조 및 지회운영 규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배한 경우에는 지회 인가 취소,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11조(감사 수감의 의무) ① 중앙협회의 정기감사계획에 의한 감사 시 시·도지회는 이를 수감 받아야 한다.
  - ② 중앙협회의 필요에 의해서 수시 또는 특별감사 시 시·도지회는 이를 수감 받아야 한다.

#### 부 칙('19.10.24)

- 제 1 조 (시행일) 이 세칙은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시행세칙 제정 이전에 가입된 지회는 장애인당구협회로부터 지회설립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하며, 이에 따라 지회설립 인증서를 소급하여 발급한다.
  - ② 제1항에 의한 지회는 제2조 제1항 각호의 제반서류를 소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지회설립 인가신청서

대한장애인당구협회 정관 제6조 및 시·도지회운영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○○○지회로서 이래와 같이 가입을 신청합니다.

지 회 명	ㅇㅇㅇㅇ시(도) 장애인ㅇㅇ협회
설립일자	2019. 0. 00.
소 재 지	
대표자	회장 ㅇㅇㅇ
최초임원	부회장 0인, 이사 0인, 감사 0인 (임원명단 붙임1 참조)
기본재산	000천원 (예금, 부동산 등) (기본재산 현황 붙임2 참조) / 없음
정 관	(정관 붙임3 참조)
시·군·구지회	00개 시・군・구 (지회 현황 붙임4 참조) / 없음

- 붙임 1. 임원명단 1부.
  - 2. 기본재산 현황 1부.
  - 3. 정관 1부.
  - 4. 시 · 군 · 구지회 현황 1부.

2019. 0. 00.

가칭) ○○○**시(도) 장애인당구협회장 (직인)** 

### 대한장애인당구협회장 귀하

계 인

## 지회설립 인가증

귀 단체를 정관 제6조 제1항 내지 제1항 및 시·도지회운영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대한장애인당구협회 지회로 인가합니다.

- 지 회 명 : ○○○○시(도)장애인당구협회
- O 대 표 자 : 회장 000
- O 소 재 지:
- O 인 가 일 : 2019. 0. 0
- O 인가번호:

2919. 0. 0.

# 대한장애인당구협회장